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또는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구 비 서 류	
구 분	구 비 서 류
무조건 면세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6조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6조제2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면세신청에 필요한 서류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6조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기증받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수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6조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